

# 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 [제4차 본회의]

### 순 서

#### □ 5분 자유발언 : 2명

- 신재화 의원 : 신장수~무주영동 고압송전선로 건설사업 이대로 꺾어놓으라
- 신미정 의원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한다

#### □ 총무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8건(조례안 5, 일반의안 3)
- 보 고 자 : 김향란 위원장

####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3건(조례안 3)
- 보 고 자 : 최준규 위원장



# 의 사 일 정

【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3. 6.(목) 10:00>

| 부 의 안 전                                                                                                                                                                                                                                                                                                                                                                                                                                                                                                                      | 비 고                                         |
|------------------------------------------------------------------------------------------------------------------------------------------------------------------------------------------------------------------------------------------------------------------------------------------------------------------------------------------------------------------------------------------------------------------------------------------------------------------------------------------------------------------------------|---------------------------------------------|
| <p>【제4차 본회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li> <li>2. 거창군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3.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4.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li> <li>5.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li> <li>6. 경남별장 민간위탁 동의안</li> <li>7.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li> <li>8. 거창 치유산업특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li> <li>9. 거창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10.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11.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ol> <p>【산 회】</p> | <p>※ 총무위원회: 1~8</p> <p>※ 산업건설위원회: 9~ 11</p> |

※ 본 일정은 의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5. 3. 6. 10:00)

# 5 분 자 유 발 언

**신장수~무주영동 고압송전선로  
건설사업 이대로 관철은가**



신 재 화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신재화 의원입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모두 들뜬 마음으로  
첫발을 내딛고 있지만 이러한 희망의 움직임에도  
한발 물러나 두려움과 걱정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지역이 있어 그 고통을 나눠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발언대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장수에서 무주영동까지 이어지는  
34만5천볼트 고압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1월에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서해·호남지역의 잉여 발전전력을 에너지가 부족한 수도권에 송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북, 충북, 충남, 경남 4개도에 7개군 26개 읍면동이 사업지역에 포함되며 사업기간은 203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에는 함양과 우리군이 포함되며 우리군에는 고제·북상·위천면이 이 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 이 사업이 알려진 것은 2024년 8월경부터로,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고압송전선로 관련 반대여론이 표출되기 시작하면서라고 합니다.

언론 자료를 찾아보면 전북자치도의회에서는 2024년 7월 초 고압송전선로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도의회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이 열린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 시기에 우리 거창에도 구체적으로 송전선로에 대해 알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읍면이 포함되는 무주군과 달리 우리군에서는 고제·북상·위천 3개 면만 대상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압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피해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처 또한 늦지 않았나 합니다.

북상면에서는 지난해 11월 13명의 인원으로, 고제면에서는 올해 2월 11명의 인원으로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고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진안군의 경우 1차 주민설명회 이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추가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무주군의 경우는 민관이 참여하는 범군민 대책위원회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간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도 주민 설명회 개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적지 않은 노력을  
보이기는 했지만,

고압송전선로 노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홀히 한 부분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며,  
의회에서도 해당 지역구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34만5천볼트의 고압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실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실감하기  
어렵다고 하며, 전자파의 유해성을 놓고 학계에서도  
찬반이 팽팽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신장수에서 무주영동으로 가는 34만5천볼트의  
고압송전선로 노선이 우리군을 비켜가기만을  
손모아 기다리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손을 쓰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고압송전선로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게 된다면,

이것은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 군의회에서는 고압송전로 사업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 사업이 전면 백지화 될 수 있도록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힘을 보탬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하여, 조속히 추진 할 것을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제안드리며

이에 집행부에서도 주민설명회 개최나 이장회보 자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도 아니고 이런 전력이 필요한 지역도 아닙니다.

수도권의 전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런 소득도 없고 피해만 가득한 사업에 고스란히 길만 내어주는 우를 범하여, 우리군과 군민께 평생 되돌릴 수 없는 상처가 남지 않도록 온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5. 3. 6. 10:00)

# 5 분 자 유 발 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한다**



신 미 정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신 미 정 의원입니다.

어제는 ‘경칩’이었습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로, 기온은 날마다 상승하며 봄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 20일이 되면 ‘춘분’으로, 본격적인 농사철의 시작입니다.

이렇듯 시간이 흘러 겨울이 봄으로 향하며 겨우내 쌓였던 눈과 얼음도 차츰 녹고 있는데, 아직까지 경기침체로 인해 군민들의 마음에는 봄이 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등 정치 불안으로 내수 경기가 얼어붙으며 민간 소비 성장률이 4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변수까지 더해지며 올해 경제 성장률은 1.6%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3월 4일 발표한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서도 올해 첫 달부터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주요 경제 지표도 코로나 때만큼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니 경기 침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로 서민들의 실질 가계소득이 낮아졌고, 소비가 줄어드니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줄어 재료비와 인건비, 임차료, 대출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쇄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또한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주요 상가 거리에서는 ‘임대’라는 팻말이 붙어져 있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고, 점심 시간에도 자리가 비어 있는 식당이 많습니다.

거창에서 유명한 식당도 예약 문의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저녁마다 손님 발길 끊이지 않던 상가 거리는 초저녁만 되어도 한산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드립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히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소비심리 상승으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실제, 올해 초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완주군이 사용처를 분석해 보니 50%가 로컬푸드와 마트에서 사용했으며, 식생활에 27%, 주유 등에 9%가 사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민생회복지원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진 서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을 준 것입니다.

물론, 거창군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와야 겨우 원래 수준의 예산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보니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월 중순 기준, 전국적으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는 19곳이라고 합니다.

2월 이후에도 다른 지자체들이 민생회복지원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을 보면, 사례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우리 군과 같은 재정상의 어려움 속에서 방법을 찾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면, 거창군도 불가능하지 않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흥군의 경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를 약 10% 절감하고, 시설비성 사업에서도 5% 조정해 예산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예산삭감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거창군도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재정 대책을 세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나중’은 늦습니다. 1년 뒤에는 지역 경제를 지금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거창군은 지금 당장 해소해야 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군민들의 어려움’ 과,  
소비 감소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군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조례안 ·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 목 차

|   |                                             |                 |    |
|---|---------------------------------------------|-----------------|----|
| 1 |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인구교육과<br>(의원발의) | 1  |
| 2 | 거창군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보건정책과<br>(의원발의) | 6  |
| 3 |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br>일부개정조례안             | 전략담당관           | 12 |
| 4 |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행정과             | 16 |
| 5 |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2개 조례의<br>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관광진흥과           | 22 |
| 6 | 경남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 전략담당관           | 26 |
| 7 |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무과             | 30 |
| 8 | 거창 치유산업특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관광진흥과           | 46 |

#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5. 3. 6.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 2. 14.

나. 발 의 자: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11명)

(표주숙,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2. 1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2. 27.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표주숙 의원]

가. 제안이유

- 거창군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충분한 교육기회 보장과 통학부담 해소를 위해 통학택시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2) 통학택시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3) 이용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4) 비용 부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원거리 통학 고등학생들의 통학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 원거리 학생들은 등·하교 시간대에 맞지 않는 버스 운행 시간과 대중교통 이용 시 완행노선, 통학시간이 길어짐에 따른 피로감 호소, 상시적인 가족차량 이용과 택시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어 왔으며,
  - 거창읍에 고등학교가 편중되어 있는 우리군의 특성상 원거리 학생들의 충분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조례 제정의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2조는 동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학생, 학습활동, 통학택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정의 규정으로써 동 조례안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임.
- 안 제4조 이용 대상 규정에 있어서는 관내 재학중인 고등학생으로 정했으며 거주 요건과 대중교통 운행노선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 안 제5조는 ‘통학 지원’의 방식에 대해 통학차량 운영비와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는바,

-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동 조례안의 체계를 보았을 때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형식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부.

##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충분한 교육 기회 보장과 통학 부담 해소를 위해 통학택시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2. “학습활동”이란 학생이 학기 중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 방과 후 프로그램 또는 야간자율학습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통학택시”란 거창군수와 협약하여 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제3조(통학택시의 운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습활동을 위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학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이용 대상) 통학택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통학 교통비 등을 지원 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1. 군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할 것
  - 가. 읍 소재 학교에 다니는 경우: 군청에서 반경 4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
  - 나. 면 소재 학교에 다니는 경우: 학교의 소재지 ‘리’ 외 지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가. 등교 시 학교 소재지까지 대중교통이 없거나, 운행노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할 것
  - 나. 학습활동을 마친 시점부터 30분 이내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이 없거나, 대중교통 운행이 종료 또는 운행 노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할 것

제5조(비용 부담 및 지원) ① 통학택시를 이용하는 학생은 통학택시 요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통학택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과 그 밖에 세부 지원기준, 신청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3. 6.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 2. 14.

나. 발 의 자: 최준규 의원 대표발의(11명)

(최준규,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2. 1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2. 27.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준규 의원]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간호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과 예비간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확보 및 외부 유출 최소화를 통해 거창 군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2)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 3) 간호인력 지원(안 제4조)

- 4) 예비간호인력 지원 (안 제 5조)
- 5) 중복지원 제한 및 대장관리 (안 제6조 ~ 제7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안의 목적은 우수 간호인력을 확보하여 거창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간호사 지역불균형과 지방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중심으로 간호학과를 신설하고,
    - 기존 대학의 간호학과 입학 정원을 증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2008년 132개에서 2023년 기준 202개로 간호교육기관이 늘어났으며, 간호학과 입학정원 수는 1만 2천명에서 2만 2천여 명 이상으로 증원되었음.
    - 하지만, 대부분 비수도권 간호사 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어 2011년과 2020년 사이 지역 간 간호사의 격차가 오히려 더 증가한 것으로 해석됨.
    - 또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배출된 전체 간호학과 졸업생 수는 183,555명인데 반해 10년 사이 증가한 보건의료기관의 전체 간호사 수는 106,691명(58.1%)으로 조사되었음.
    - 10년 동안 총 76,864명(41.9%)의 간호사 인력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탈된 것으로 확인됨.
- \* 「간호사 인력의 지역별 분포와 불균형 수준에 대한 실증분석」-간호행정학회지

- 지방 간호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거나 유희 간호사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군이 선도적으로 간호인력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임.
- 더욱이, 우리군에서는 거창적십자병원을 이전하여 300병상 규모의 ‘복합의료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므로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확보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 본 조례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간호인력’과 ‘예비 간호인력’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 안 제3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는 군수의 책무와 지원범위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3조제2항 및 제1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인력 등의 복지향상과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그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거창군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예비간호인력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간호인력의 확보로 거창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인력”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간호사로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예비간호인력”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경남도립거창대학에서 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중 졸업 후 군 소재 의료기관에 취업하기로 약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수 간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간호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기관 및 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예비간호인력의 군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간호인력 지원) 군수는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간호인력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2.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
3. 그 밖에 간호인력의 건강권 등을 위한 사업

제5조(예비간호인력 지원) 군수는 예비간호인력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등) ① 군수는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이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제7조(대장관리) 군수는 지원금 지급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을 위해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5. 3. 6.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 2. 14.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2. 1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2. 27.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전략담당관 이남열]

가. 제안이유

- 정비한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경남별장을 운영하고 관광객과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 인구 유입 및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경남별장을 정의함(안 제2조)
- 2) 빈집 활용의 용도에 경남별장을 추가함(안 제8조)
- 3) 경남별장 설치, 이용료 등을 신설함(안 제9조, 별표 1, 별표 2)
  - 가) 설치·운영, 위탁
  - 나) 이용료, 면제, 반환 기준, 이용제한
  - 다) 프로그램 체험비 등 지원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개정안은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경남별장을 운영하고 관광객과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거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것임.

#### ▷ 경남별장 시설 현황 ◁

| 시설명   | 시설유형   | 소 재 지         | 면적(m <sup>2</sup> ) |
|-------|--------|---------------|---------------------|
| 별장1호  | 한옥주택   | 남하면 월곡길 1-14  | 대지 721 / 연면적 69     |
| 별장2호  | 한옥주택   | 남하면 월곡길 11-12 | 대지 271 / 연면적 85     |
| 별장3호  | 한옥주택   | 남하면 월곡길 93-27 | 대지 453 / 연면적 39     |
| 웰컴하우스 | 커뮤니티공간 | 남하면 월곡길 81    | 대지 121 / 연면적 48     |

- 안 제2조제5호에 ‘경남별장’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 제1항제4호에 빈집의 활용방안으로 경남별장 등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숙박시설을 신설하였음.
- 안 제9조를 신설하여 군수가 경남별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용료와 반환 기준 등을 규정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체험비 등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함.
- 안 제9조에 따른 경남별장 이용료 반환 기준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무리가 없어 보임.
-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 없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남별장”이란 활용을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생활)으로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남별장 등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숙박시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경남별장 설치 등) ① 군수는 관광객 등에게 숙박 제공을 위해 경남 별장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경남별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경남별장 이용료 및 면제 기준은 별표 1,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이나 안전 등을 위해 경남별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경남별장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체험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6.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 2. 14.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2. 1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2. 27.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윤광식]

가. 제안이유

-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의 기준,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등을 정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우호 증진 및 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책무를 정함(안 제1조~4조)
- 2) 자매결연등 및 기준, 절차를 정함(안 제5조·제6조)
- 3) 교류협력 사업 및 지원, 문화관광시설의 감면을 정함(안 제7조·제8조)
- 4) 해지를 정함(안 제9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안은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으로
  - 지방자치법 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협력, 통상·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93조를 근거로 하여 국내·외 도시만이 아닌 해외 민간기관 및 국제기구나 국제 비정부기구 등과의 교류 협력으로까지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면, 제명에서 ‘도시와의’를 삭제하고 「거창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 함양군, 거제시 등 도내 타 시·군 제명 참조
- 같은 맥락으로 안 제1조 ‘목적’ 역시 “국내외 도시와 활발한 교류”에 대해 입안자의 입법 의도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에 국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범위를 “거창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의 민간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하 “국내외 도시 등”이라 한다)“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 덧붙여, 본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매결연”이라는 용어는 성별 편향적 용어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데다 인권위원회 및 여러 자치단체에서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상호협약”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부.

##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 국내외 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과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도시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교류협력 관계를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교류의사를 바탕으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쌓아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하며 앞으로 자매결연을 지향하는 교류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 분야에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자매결연등 및 기준) 군수는 교류협력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거나 우호교류를 위한 협약(이하 “자매결연등”

이라 한다)을 하여 교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의 기대가능성
5.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등

**제6조(자매결연등의 절차 등)** ① 자매결연은 우호교류 과정을 통해 충분한 사전교류 후에 한다.

② 자매결연등은 군수와 국내외 도시 단체장이 공동의 관심 분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한 협약서에 합의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자매결연등의 모든 절차와 협약서의 내용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 부담 등은 호혜주의에 따라 군수와 국내외 도시 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교류협력 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교류협력 활성화 및 우호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교류협력
2.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업간 교류협력
4. 지역 농특산물 및 자원의 교류를 통한 상호실익 증진
5. 군 우수정책의 홍보 및 공유
6. 그 밖에 군수가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군이 추진하는 교류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실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문화·관광시설의 감면)** 군수는 자매결연등을 한 도시의 주민이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문화·관광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군민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제9조(자매결연등의 해지) 군수는 자매결연등을 한 도시와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등이 유명무실한 경우 자매결연등을 해지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자매결연등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6.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2. 14.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2. 14.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2. 27.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 가. 제안이유

- 거창군을 찾는 방문객이 거창군 곳곳을 둘러보고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과테마파크 등 시설의 휴무일을 조정하여 주중 관광객의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공공시설 휴무일 일괄 조정(안 제1조·제2조)
  - 1) 조례 2건
    - 가)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 나) 거창군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2) 휴무일 변경: 월요일 ⇒ 수요일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 개정안은 거창군 사과테마파크와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휴무일을 월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대체공휴일이 포함된 토·일·월 여행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관광객 유입을 늘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임.
- 2023년 1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대체공휴일 지정이 국내관광 소비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이 1일 증가할 경우 연간 국내여행 소비액이 4,318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 ‘2022년 3분기 국민여행조사’에서는 전년도에 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비여행자 절반(51.6%) 이상이 “시간이 없어서”라고 답한 것으로 보아
-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효과로 휴일이 늘어나면 짧은 국내여행 수요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해피 먼데이’ 정책과 미국의 ‘월요일 공휴일 법’ 등과 같이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확보하는 방안 중 하나로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 중이기도 함.
- 관광트렌드가 토·일·월 대체공휴일로 변하는 만큼 공공시설의 휴무일을 월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  
정에 관한 조례안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월요일”을 “수요일”로 한다.

제2조(「거창군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거창군 거창천적  
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월요일”을 “수요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남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3. 6.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 2. 14.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2. 1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2. 27.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전략담당관 이남열]

가. 제안이유

○ 빈집의 새로운 활용 방안으로 경남별장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 시설명       | 시설유형       | 소재지           | 면적(m <sup>2</sup> ) | 주요시설          |
|-----------|------------|---------------|---------------------|---------------|
| 별장1호      | 한옥주택       | 남하면 월곡길 1-14  | 대지 721<br>연면적 69    | 주방1,다목적1,침실1  |
| 별장2호      | 한옥주택       | 남하면 월곡길 11-12 | 대지 271<br>연면적 85    | 주방1,다목적1,침실1  |
| 별장3호      | 한옥주택       | 남하면 월곡길 93-27 | 대지 453<br>연면적 39    | 주방1,다목적1,침실2  |
| 웰컴<br>하우스 | 커뮤니티<br>공간 | 남하면 월곡길 81    | 대지 121<br>연면적 48    | 카페, 공유주방, 세탁방 |

## 나. 민간위탁 내용

- 1) 위탁사무 : 경남별장 활성화,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2) 위탁기간 : 조성완료일로부터 2년간
- 3) 위탁예산 : 2년간 2억원(광역기금 1, 군비 1) ※ 제286회 임시회 추경예정
- 4)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 선정
- 5) 선정기준
  - 수탁자의 적정성, 마케팅 전문성 및 운영능력(인력, 재정) 등을 고려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평가
- 6)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 민간위탁 위배사항 없음(붙임2 참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동의안은 빈집의 새로운 활용 방안으로 경남별장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해당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기업 또는 단체에게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경남별장 조성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음.

### 〈 경남별장 조성사업 개요 〉

- 사업기간: 2024~2026년(3년간)
- 사업위치: 남하면 월곡길 1-14, 11-12, 93-27, 81
- 총사업비: 3,000백만원(광역기금1,500, 군비1,500)
  - \* '24예산: 10억원(지방소멸대응기금5, 군비5)
- 사업내용
  - 빈집활용 마을호텔 조성(3), 지원공간(1)
  - 지역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소득창출 사업

- 최근 도시민의 4도 3촌, 주말농장 등 농촌 체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청년들의 농촌 창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농촌 빈집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경북 문경시의 경우 1790년대 지어진 한옥, 양조장, 적산가옥 등을 한옥스테이, 카페, 로컬 마켓 등으로 리모델링해 연간 방문객 12만 명을 불러들이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 농촌 빈집을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활용을 통해 농촌 소멸을 극복 중인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일본 고스게촌의 150년된 전통가옥과 절벽 위의 마을호텔로 관광객 18만 명을 유치한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음.
- 농촌 빈집을 방치하게 되면 위생이나 안전 문제를 일으켜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경남별장 조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생활 인구 유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도입 초기 경남별장의 인지도 제고와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운영 방식 도입을 위해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6.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 2. 14.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2. 1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2. 27. 상정·의결)

## 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이정희]

### ① 공공산후조리원 및 행복맘센터 건립사업

#### 1. 제안이유

- 가. 임신 전 건강관리 및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건강한 양육을 돕는 산후조리원 등 부재로 원정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불편 증가
- 나. 의료복지타운 내 분만산부인과와 연계한 원스톱 임신·출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및 행복맘센터 건립 추진

#### 2. 주요내용

##### 가. 개 요

- 1) 위 치 : 거창읍 대평리 1362-23번지 일원
- 2) 사 업 명 : 공공산후조리원 및 행복맘센터 건립사업
- 3) 사업기간 : 2025. ~ 2027.
- 4) 사 업 비 : 12,000백만원 \*상세내역 붙임참조
- 5) 사업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및 행복맘센터 건립

- 부지면적 2,800㎡ / 연면적 2,101㎡ / 지상2층
- 공공산후조리원 : 모자동실(13), 영유아실, 프로그램실, 마사지실 등
- 행복맘센터 : 행정실, 프로그램실, 모자보건실 등

## 나. 취득재산 내역

### 1) 개요

(단위:㎡, 천원)

| 구분         | 재산종별 | 재 산 의 표 시               |            |       | 기준가격       | 취득시기 | 비고 |
|------------|------|-------------------------|------------|-------|------------|------|----|
|            |      | 소 재 지                   | 지목<br>(형식) | 연면적   |            |      |    |
| 취득<br>(신축) | 건물   | 거창읍 대평리<br>1362-23번지 일원 | 건물<br>1동   | 2,101 | 89,230,000 | 2027 |    |

### 2) 주요시설

| 층별                                       | 용도          | 주요시설 설치계획                                                                     | 운영주체          |
|------------------------------------------|-------------|-------------------------------------------------------------------------------|---------------|
| 지상1층<br>(356㎡)                           | 행복맘센터       | 행정실, 프로그램실, 문서고, 모자보건실 등                                                      | 거창군<br>(직영)   |
| 지상1층<br>(457.68㎡)                        | 공공산후<br>조리원 | 행정실, 세탁실, 다용도실, 상담실, 기계실 등                                                    | 거창군<br>(민간위탁) |
| 지상2층<br>(1,287.9㎡)                       | 공공산후<br>조리원 | 모자동실(11), 다둥이실, 장애인산모실, 프로그램실, 영유아실, 사전관찰실, 음압실, 모유수유실, 피부관리실, 식당, 린넨실, 황토방 등 | 거창군<br>(민간위탁) |
| 연면적 2,101㎡(공공산후조리원 1,745㎡ / 행복맘 센터 356㎡) |             |                                                                               |               |

## 2.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 1. 제안이유

- 장례문화 인식변화에 따른 화장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원정화장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적이고 현대화된 화장시설 건립

### 2. 주요내용

#### 가. 사업 개요

- 1) 사 업 명 :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사업
- 2) 위 치 : 남하면 대야리 1228-46번지 일원
- 3) 사업기간 : 2022. ~ 2026.

- 4) 사 업 량 : 부지규모 31,600㎡, 건물면적 2,910㎡(지하 1층, 지상 2층  
 ▶ 화장로 3기,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휴게실, 주차장, 조경시설 등  
 5) 사 업 비 : 23,300백만원(국 4,900, 도 1,000, 군 17,400)

##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 1) 개 요

(단위:㎡, 천원)

| 구분         | 재산종별 | 재 산 의 표 시            |            |       | 기준가격       | 취득시기 | 취득사유 | 재 산 소유자 |
|------------|------|----------------------|------------|-------|------------|------|------|---------|
|            |      | 소 재 지                | 지목<br>(형식) | 면 적   |            |      |      |         |
| 취득<br>(신축) | 건물   | 남하면 대야리<br>1228-46번지 | 건물<br>1동   | 2,910 | 11,676,000 | 2026 | 화장시설 | 거창군     |

### 2) 주요시설

| 구 분  | 면 적(㎡)   | 시설 계획안                                                                      | 비 고 |
|------|----------|-----------------------------------------------------------------------------|-----|
| 계    | 2,910.79 |                                                                             |     |
| 지하1층 | 317.74   | - 발전기실, 전기실, 기계실, 공용부                                                       |     |
| 지상1층 | 1,480.47 | - 화장로, 화장로 전실, 고별실, 분골실<br>- 사무실, 접수실, 소장실, 문서고, 당직실<br>- 대차보관실, 중앙제어실, 공용부 |     |
| 지상2층 | 1,112.58 | - 유족대기실, 용품점, 매점, 카페테리아<br>- 화장로기계실, 창고, 공용부                                |     |

## ③ 거창군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 1. 제안이유

- 수도권 등에서 이전하는 은퇴자들의 거창군 정착을 위하여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에 복합문화센터 등을 조성하여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업 개요

- 1) 사 업 명 : 거창군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 2)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19-10번지 일원
- 3) 사업기간 : 2024. ~ 2027.
- 4) 사 업 량 : 개발면적 49,246㎡

- ▶ 단독주택 용지 47필지 조성, 타운하우스 16세대, 복합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건립
- 5) 사 업 비 : 29,738백만원(국 6,014, 기금 7,600, 도 751.8, 군 15,372.2)

##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 1) 개 요

(단위:m<sup>2</sup>, 천원)

| 구분         | 재산종별 | 재 산 의 표 시              |            |       | 기준가격      | 취득시기 | 취득사유               | 재 산 소유자 |
|------------|------|------------------------|------------|-------|-----------|------|--------------------|---------|
|            |      | 소 재 지                  | 지목<br>(형식) | 면 적   |           |      |                    |         |
| 계          |      |                        |            | 4,210 |           |      |                    |         |
| 취득<br>(신축) | 건물   | 거창읍 정장리<br>819-10번지 일원 | 건물<br>16동  | 1,760 | 6,000,000 | 2027 | 지역활력타운<br>(타운하우스)  | 거창군     |
| 취득<br>(신축) | 건물   |                        | 건물<br>1동   | 1,200 | 4,200,000 |      | 지역활력타운<br>(복합문화센터) |         |
| 취득<br>(신축) | 건물   |                        | 건물<br>1동   | 1,250 | 4,800,000 |      | 지역활력타운<br>(국민체육센터) |         |

### 2) 주요시설

| 구 분    | 면 적(m <sup>2</sup> ) | 시설 계획안                                                                 | 비 고 |
|--------|----------------------|------------------------------------------------------------------------|-----|
| 계      | 4,210                |                                                                        |     |
| 타운하우스  | 1,760                | - 단독주택 16세대(세대당 110m <sup>2</sup> )                                    |     |
| 복합문화센터 | 1,200                | - 다목적 교육장, 북카페, 구내식당, 셀프빨래방<br>- 웰니스시설(명상/요가), 동아리방<br>- 게스트하우스 5실     |     |
| 국민체육센터 | 1,250                | - 건강측정 및 운동처방실, 메디컬룸, 편의점<br>- 헬스장, 탁구장, GX룸<br>- 스크린골프장, 게이트볼장 및 대기공간 |     |

## 4 「가칭」거창군 육아드림센터 건립

### 1. 제안이유

가. 경남에서 영육아 인구수와 세자녀 이상의 가구수가 군부 1위로 건전한 육아의 정보 수집·제공의 컨트롤 타워 필요

나. 임신·출산 공공시설, 돌봄시설 조성으로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 돌봄·육아+출산 지원 등의 기능이 복합된 센터\* 건립을 통한 인프라 구축으로 양육부담 경감에 따른 출산율 증가

\* 영유아 관련 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

다. 저출산·고령화 농촌 지역의 인구 추세의 반전으로 인구구조의 질적 전환 기반 강화

라. 합계출산율 도내 1위를 넘어 전국적인 수준으로의 향상을 위한 출산 이후 육아·돌봄 인프라 확충

- 육아드림센터 건립을「거창형 의료복지타운」조성과 연계 추진

## 2. 주요내용

### 가. 취득 개요

- 1) 사 업 명 : 「가칭」육아드림센터 건립
- 2) 사업기간 : 2024. ~ 2027.3.
- 3) 사업위치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62-38(거창형 의료복지타운)
- 4) 사업내용 : 돌봄.육아+출산 지원 등의 복합 기능 센터 건립
- 5) 사 업 비 : 10,030백만원(공사비 10,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 총사업비   | 기투자 | 2025년 |   |       |       | 2026년 이후  | 비고 |
|--------|-----|-------|---|-------|-------|-----------|----|
|        |     | 계     | 국 | 도     | 군     |           |    |
| 10,030 | 30  | 2,000 | - | 1,000 | 1,000 | 8,000(군비) |    |

### 나. 취득재산 내역

| 사업명               | 토지소재지           | 신축규모                    | 기준가격   | 비고 |
|-------------------|-----------------|-------------------------|--------|----|
| 「가칭」거창군 육아드림센터 건립 | 거창읍 대평리 1362-38 | 연면적 : 2,400㎡<br>(지상 3층) | 10,000 | 신축 |

## 5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

### 1. 제안이유

- 소각시설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환경보존 및 주민 생활 환경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적이고 현대화된 소각시설 건립

### 2. 주요내용

#### 가. 취득개요

- 1) 사 업 명 :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사업

- 2) 위 치 : 거창읍 양평리 343번지  
 3) 사업기간 : 2022. ~ 2027.  
 4) 사 업 량 : 건물면적 1,706㎡, 연면적 3,489㎡(지하 1층, 지상 4층)  
 ▶ 소각시설 1식(48톤), 사무실, 중앙제어실, 주차장 등  
 5) 사 업 비 : 34,076백만원(국 10,223, 도 7,756, 군 16,097)

## 나. 취득재산 내역

### 1) 개 요

(단위:㎡, 천 원)

| 구분         | 재산종별 | 재 산 의 표 시   |            |       | 기준가격       | 취득시기 | 취득사유 | 재 산 소유자 |
|------------|------|-------------|------------|-------|------------|------|------|---------|
|            |      | 소 재 지       | 지목<br>(형식) | 연면적   |            |      |      |         |
| 취득<br>(신축) | 건물   | 거창읍 양평리 343 | 건물<br>1동   | 3,489 | 34,076,000 | 2027 | 소각시설 | 거창군     |

### 2) 주요시설

| 구 분  | 연면적(㎡)  | 시설 계획안                                                                                | 비 고 |
|------|---------|---------------------------------------------------------------------------------------|-----|
| 계    | 3,489   |                                                                                       |     |
| 지하1층 | 419.61  | - 펌프실, 침출수처리시설                                                                        |     |
| 지상1층 | 1429.94 | - 폐기물반입장, 장비반출입실, 비상발전기실, 공기압축기실, 소석회저장실, 유인송풍기실, 소각로실, 바닥재반출실, 보일러급수실, 증기터빈실, 비산재반출실 |     |
| 지상2층 | 568.17  | - 전기실, 교반기점검실, TMS실, 송풍기실, 증기분배기실                                                     |     |
| 지상3층 | 571.76  | - 홍보실, 휴게실, 화장실, 사무실, 서고, 다목적실, 파쇄기실, 증기분배기실                                          |     |
| 지상4층 | 499.47  | - 전자기기실, 중앙제어실, 샤워실, 탈의실, 다목적실, 창고, 크레인정비실, 악취처리실                                     |     |

## 6 주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1. 제안이유

- 농식품부 소관 농촌협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상면 문화누리 거점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효과 증대 및 주민이용편의 제공 목적을 위해 사업부지 내 개인재산(취득), 건축물을(철거)후 신축코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주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2) 위 치 :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713 일원
- 3) 사업기간 : 2023. 1. ~ 2027. 12. / 5년간
- 4) 사업내용 : 문화누리 거점센터 신축(2층) 연면적 A=562㎡
- 5) 사 업 비 : 4,000백만원 (균 2,800, 도 360, 군 840)

#### 나. 취득 및 처분 재산내역

| 구분  | 재산<br>종별 | 재산의 표시                                          |        | 1)기준가격<br>(천원) | 2)실집행액<br>(천원) | 사업내용               | 시기                |
|-----|----------|-------------------------------------------------|--------|----------------|----------------|--------------------|-------------------|
|     |          | 소 재 지                                           | 면적(㎡)  |                |                |                    |                   |
| 총 계 |          |                                                 |        | 2,553,809      | 3,137,616      |                    | 2025<br>~<br>2026 |
| 취득  | 소 계      |                                                 | 711.62 | 2,422,199      | 2,492,586      |                    |                   |
|     | 토지       | 농기계 수리센터<br>(주상면 도평리<br>715-1, 715-5,<br>713-4) | 70.0   | 4,067          | 25,300         | 협의 취득<br>후 철거      |                   |
|     | 건축물      |                                                 | 79.62  | 1,532          | 50,686         |                    |                   |
|     | 건축물      | 여성농업인센터<br>(주상면 도평리<br>713번지)                   | 562.0  | 2,416,600      | 2,416,600      | 신축                 |                   |
| 소 계 |          |                                                 | 946.85 | 131,610        | 645,030        |                    |                   |
| 처분  | 건축물      | 여성농업인센터<br>(주상면 도평리<br>713번지)                   | 579.95 | 49,875         | 541,440        | 철거                 |                   |
|     |          | 창고<br>(주상면 도평리<br>711-3번지)                      | 287.28 | 74,888         | 84,240         | 철거 후<br>사업부지<br>활용 |                   |
|     |          | 농기계 수리센터<br>(주상면 도평리<br>715-1, 715-5,<br>713-4) | 79.62  | 6,847          | 19,350         |                    |                   |

※ 1)기준가격 적용

- 1) 토지 : 공시지가, 2) 건물 : 시가표준액, 3) 신축 : 4,300천원/㎡
- 4) 철거 : 86천원/㎡(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2)실집행액

- 1) 취득·처분 : 가감평가, 2) 신축 : 4,300천원/㎡

## 7 청년창업 및 거창 활력 복합센터 건립공사

### 1. 제안이유

- 거창군 청년구직 및 창업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인구교육과)’와 주민자립운영조직 양성 및 농촌지역 부족한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거창활력센터(행복농촌과)’ 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추진중인 「**청년창업 및 거창 활력 복합센터 건립공사**」의 사업부지 내 개인재산 편입, 건축물 철거 후 신축하여 농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청년창업 및 거창 활력 복합센터 건립공사
- 2)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45-1번지 일원
- 3) 사업기간 : 2023. 1. ~ 2027. 12. / 5년간
- 4) 사업내용 : 복합센터 신축(거창활력센터+청년창업지원센터), 6층연면적 A=1,940㎡
- 5) 사 업 비 : 15,750백만원 (청년(인구교육과) 6,750 + 농촌(행복농촌과) 9,000)

#### 나. 취득 및 처분 재산내역

| 구분  | 재산<br>종별 | 재산의 표시        |         | 1)기준가격<br>(천원) | 2)실집행액<br>(천원) | 사업내용                 | 시기                |
|-----|----------|---------------|---------|----------------|----------------|----------------------|-------------------|
|     |          | 소 재 지         | 면적(m²)  |                |                |                      |                   |
| 총 계 |          |               |         | 9,791,105      | 12,519,780     |                      | 2025<br>~<br>2026 |
| 취득  | 소 계      |               | 4291.5  | 9,652,854      | 12,020,990     |                      |                   |
|     | 건축물      | 거창읍 상림리 145-1 | 804.5   | 138,251        | 498,790        | 협의 취득                |                   |
|     | 토지       |               | 803.0   | 892,190        | 1,766,600      |                      |                   |
|     | 건축물      |               | 1,940.0 | 8,342,000      | 8,342,000      | 신축                   |                   |
|     | 토지       | 거창읍 상림리 137-4 | 145.0   | 54,650         | 275,500        | 협의 취득<br>(주차장 시설 활용) |                   |
|     | 토지       | 거창읍 상림리 131-3 | 599.0   | 225,763        | 1,138,100      |                      |                   |
| 소 계 |          |               | 804.5   | 138,251        | 498,790        |                      |                   |
| 처분  | 건축물      | 거창읍 상림리 145-1 | 804.5   | 138,251        | 498,790        | 철거                   |                   |

※ 1)기준가격 적용

1) 토지 : 공시지가, 2) 건물 : 시가표준액, 3) 신축 : 4,300천원/㎡

2)실집행액 적용

1) 취득·처분: 가감정가 2) 신축 : 4,300천원/㎡

## 8 마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1. 제안이유

- 농식품부 소관 농촌협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관련 부족한 서비스 기능시설 조성 및 사회단체 및 공동체를 위한 주민 커뮤니티 휴게 공간 조성을 위해 사업부지 내 건축물을 신축코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마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2) 위     치 : 마리면 말흘리 247-2번지 일원
- 3) 사업기간 : 2023. 1. ~ 2027. 12. / 5년간
- 4) 사업내용 : 웰니스 문화자치센터 조성(2층행정복지센터 복합화) 연면적 A=1,407m<sup>2</sup>  
→ (복합화) 기초생활거점센터 743.7m<sup>2</sup> + 행정복지센터 663.3m<sup>2</sup>
- 5) 사 업 비 : 7,500백만원(농식품부 승인 4,000, 군 추가(행정복지센터) 3,500)

#### 나. 취득 재산내역

| 구분 | 재산<br>종별 | 재산의 표시                          |           | 1)기준가격<br>(천원) | 시기                | 사유                | 비고 |
|----|----------|---------------------------------|-----------|----------------|-------------------|-------------------|----|
|    |          | 소 재 지                           | 면적<br>(㎡) |                |                   |                   |    |
| 계  |          |                                 |           | 6,050          |                   |                   |    |
| 취득 | 건축물      | 마리면 말흘리<br>274-4, 245,<br>220-1 | 1,407.0   | 6,050.0        | 2025<br>~<br>2026 | 웰니스 문화<br>자치센터 조성 | 신축 |

※ <sup>1)</sup>기준가격 적용 : 신축(4,300천원/㎡)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① 공공산후조리원 및 행복맘센터 건립사업은

- 거창 의료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의료복지타운 내 분만산부인과와 연계한 원스톱 임신·출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임.
-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78.1%가 선호할 정도로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 잡았으나 전국 산후조리원 477곳 중 민간산후조리원은 전체 산후조리원의 97%(460곳)인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3%(17곳)에 불과해 공공성이 약한 실정임.
- 지역별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데 전국 산후조리원 477개소 중 절반 이상이 서울(116곳)과 경기도(147곳)에 집중돼 있고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98개 지자체에(49%)에는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는데 우리군 역시 이에 해당함.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제1항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며,
- 원정 산후조리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우리 군 산모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됨.

## ②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사업은

- 경남도 내 화장시설은 10곳이며, 그중 8곳이 거창군에서 100km이상 떨어져 있으며, 이동시간은 10곳 모두 1시간 10분 넘게 소요됨.
- 또한, 보건복지부, 2023-2027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중 '전국 화장시설 지도'에 따르면 거창군과 경계하고 있는 함양, 합천, 산청, 무주, 장수군 역시 관외 화장을 해야 하는 지역으로 구분된 것으로 보아 향후 관내뿐 아니라 관외에서도 화장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화장률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관내 화장장이 없는 우리 군민들은 원정 화장으로 시간과 비용을 적게는 2배, 많게는 3~4배로 지급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음.
-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 및 화장문화 정착, 지역 간 이용료 편차, 화장장 접근성 등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화장 시설 건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③ 거창군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 7개 부처(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를 복합 지원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이 주거단지에 입주하는 귀향·귀촌인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사업임
- 우리군은 20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 내용은 단독주택 16세대로 이루어진 타운하우스와 복합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임.

\* 2023년 선정: 경남 거창군, 강원 인제군, 충북 괴산군, 충남 예산군, 전북 남원시, 전남 담양군, 경북 청도군

- 우리 군에서 지방소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도비를 확보한 것은 고무적인 결과이며 은퇴자들을 위한 신규 주택 공급으로 약간의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빈집의 증가,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노후 주택의 공실률 증가 등을 고려한 다각화된 정책이 필요해 보임.

#### ④ 「가칭」거창군 육아드림센터 건립사업은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과 연계한 임신·출산·육아 인프라 집적화로 지역 완결형 의료·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돌봄과 육아, 출산 지원 등의 기능이 복합된 시설을 만들  
고자 함.
- 지방소멸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육아 기반 시설의 수요가 매우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는 실정에 이와 같은 공공형 육아드림센터 건립은 출산과 육아에 있어 안정적 기반을 제  
공할 것으로 판단됨.

#### ⑤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사업은

- 기존 소각시설 내구연한(2023년) 도래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건축 규모는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3,489m<sup>2</sup> 정도이며,
- 일일 시설용량은 48톤, 사무실, 중앙제어실, 주차장 등이 포함됨.

- 2월 중 1차 총사업비 조정 및 재원 협의를 마무리하고,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허가 완료 등 행정절차 후 6월에 착공할 예정임.
- 해당 소각시설 신설을 통해 폐기물을 친환경적이고 안정적 처리로 환경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소각 효율 및 매립시설 사용기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⑥ 주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 본 조성사업은 2023년 농촌협약 선정 사업으로 주민위원회 협의와 선진지 견학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기본계획을 승인·고시하였음.
- 주요 내용으로는 주상면 도평리 713번지 소재 여성농업인센터, 도평리 711-3번지 창고, 도평리 715-1, 715-5, 713-4번지에 소재한 농기계수리센터를 철거하고, 같은 자리에 “주상면 문화누리 거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임.
- 문화누리 거점센터 내에는 마을카페, 공유주방, 체력단련실, 다목적멀티룸으로 구성할 예정임.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란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문화·복지 등 서비스 공급 거점의 기능을 강화하고, 거점을 기반으로 배후 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기능을 확대하여 농촌지역 주민 전체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 노후 건축물 철거에 따른 쾌적한 환경 조성과 주민 생활 편의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7 청년창업 및 거창 활력 복합센터 건립공사는

- 거창읍 상림리 145-1번지(구 하나로마트)에 6층(연면적1,94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목적은 ‘청년창업지원센터’와 ‘거창활력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
- 공간 구성은 운영지원사무실, 주민여가학습실, 가족어울림극장, 공유부엌, 창업지원오피스 등 교육·돌봄·문화·여가·창업지원의 종합 인프라로 이루어짐.
- 거창읍 상림리 145-1번지(구.하나로마트)의 토지와 건물은 제273회 임시회 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승인받은 사항이며, 이번에 승인할 사항은
  - 건축물 신축(1,940㎡ / 8,342백만원)과
  - 주차장 용지 매입(744㎡ / 1,413백만원)임.
- 2023년 9월 청년기본법 개정을 통해 청년친화도시 제도가 법제화된 후 처음으로 거창군이 국무조정실 주관 청년친화도시로 선정(2025.2.11.)되어 농촌형 청년친화도시 모델로서 주목받고 있음.
- 농촌지역 군 단위, 인구감소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그 의의와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임.

- 청년이 주도적으로 농촌 활력을 이끌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심점이 될 하드웨어적 기반과 함께 향후 지속적인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임.

#### 8. **마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 농식품부 소관 농촌협약사업으로 마리면 말흘리 274-4번지 일원에 2층 규모의 복합화시설(1,407㎡ / 7,500백만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지역아동센터, 민원실, 북카페, 마을사랑방, 다목적 강당,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등으로 구성하여 문화·복지·체육·휴게의 기능을 한곳에 집중시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새로운 인프라를 추가로 조성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나,
- 시설 조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배후 마을 주민들도 중심지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교통, 시설,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지역 내 자원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거창 치유산업특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5. 3. 6.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2. 14.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2. 1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2. 27.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 가. 제안이유

- 향노화힐링특구 기간 만료 및 향노화보다 폭넓은 개념의 치유산업의 브랜드 선점을 위해 ‘거창 치유산업특구’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에 의거 거창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가. 개 요

| 구 분   | 당 초                       | 변 경(안)               | 비 고              |
|-------|---------------------------|----------------------|------------------|
| 명 칭   | 거창 향노화힐링특구                | 거창 치유산업특구            |                  |
| 위 치   | 가조면 일부리 1300번지 일원 1,210필지 | 가조면 수월리 산19 일원 433필지 |                  |
| 면 적   | 4,571,088㎡                | 2,933,980㎡           | 감) 1,637,108㎡    |
| 운영기간  | 2016. ~ 2023.             | 2024. ~ 2026.(3년)    | 3년 연장            |
| 사 업 비 | 438.15억원                  | 302.55억원             | 감) 135.6억원       |
| 특화사업자 | 거창군수                      | 거창군수                 |                  |
| 특화사업  | 3개 특화사업 / 11개 세부사업        | 3개 특화사업 / 8개 세부사업    |                  |
| 규제특례  | 5개 규제 특례                  | 6개 규제 특례             | 기존 4, 추가 2, 삭제 1 |

## 나. 변경사유

- 1) 「거창 향노화힐링특구」기간이 만료('23.12.31.)됨에 따라 특구 기간 연장 필요
- 2) 동서남북 관광벨트가 완성됨에 따라 우리군의 풍부한 산림, 농업, 웰니스 관광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향노화라는 테마의 확장성 부족
- 3) 「거창 치유산업특구」전환을 통해 치유산업 도시 중심지로서의 도약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제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화특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출하였음.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04. 3. 22. 지역특구법 제정으로 만들어졌음.
- 지정 효과로는 특구 지정을 통해 59개 개별법에서 정한 129개 규제 특례를 「지역특구법」에 따라 특구 내 적용 가능하며, 우리군에서는 6개 개별법에서 규제특례를 받게 됨.

- 우리군은 2016년부터 거창 향노화힐링특구가 지정되어 있었으나, 2023년 기간이 만료되어 “향노화” 보다 폭넓은 개념의 “치유산업특구”로 변경하는 것은 치유산업의 브랜드 선점과 우리군과의 이미지 매칭, 치유산업 중심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 변경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찬성 의견 채택**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 목 차

|   |                                               |          |
|---|-----------------------------------------------|----------|
| 1 | 거창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1  |
| 2 |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br>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6  |
| 3 |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10 |

# **거창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5. 2. 14.

나. 발 의 자 :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

(김향란,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5. 2. 14.

라. 상정일자 : 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2. 27.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향란 의원)**

-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와 관련 교육 훈련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홍보와 우선구매 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4.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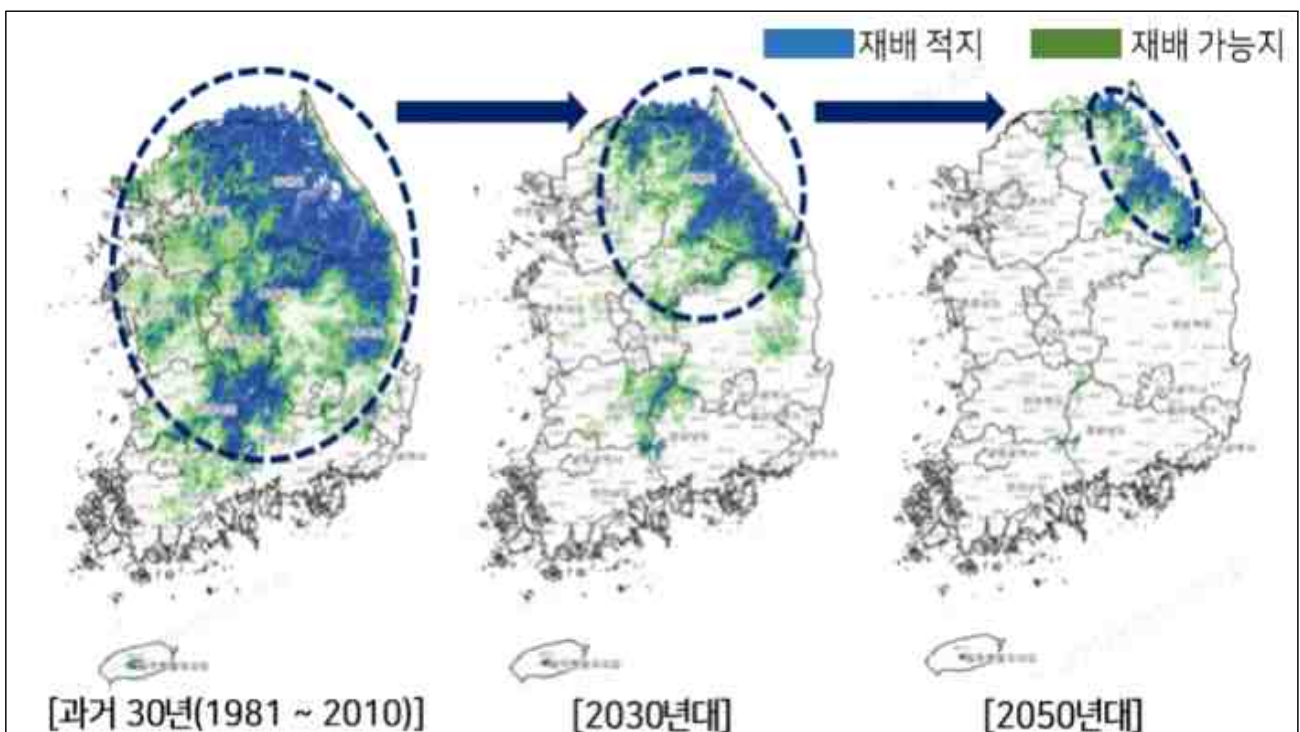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 다. 합 의 : 미래농업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02. 05. ~ 02. 10.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지역별 재배 적합한 작물의 생육환경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거창을 대표하는 농산물인

사과만 해도 강원 지역의 재배면적이 최근 13년 간 약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과의 재배지역이 지속적으로 북상하고 있음.

- 국립기상연구소(2009년)의 보고에 따르면 2050년에는 경남지역은 월평균 기온  $10^{\circ}\text{C}$  이상인 달이 8개월 이상이고, 1년 중 가장 추운 달 월평균기온이  $18^{\circ}\text{C}$  이하인 아열대 기후대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한 바 있음.
- 또한, 농촌진흥청의 사과 재배지 변동 예측 지도 자료를 보면 2050년이 되면 거창은 더 이상 사과재배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사과 재배지 변동 예측 지도(자료=농촌진흥청, 농협빅데이터플랫폼 2024.12.02.)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다가오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창에 적합한 열대·아열대 품종 개발, 거창의 주요 작물에 대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훈련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 도모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군수는 기후 변화 대비 작물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이며,
- 안 제5조에서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군 현실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태조사 시 관련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문성 있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에서는 기후변화 대비 신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 구축, 전문인력 양성, 판로 개척 및 소비촉진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이 새로운 작물을 재배코자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안 제8조와 제9조에 컨설팅 추진과 소비촉진 추진 등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최근 기후변화에 대비한 스마트팜 농업의 확대와 본 조례에서 규정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거창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면 사업 추진에 있어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며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5,000만원 미만으로 조례 제정의 실질적인 효과와 집행기관의 추진의지에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으나 기이 편성된 관련 예산들을 조례에 근거하여 알차게 집행함으로써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5. 2. 14.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2. 14.  
다. 상정일자 : 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2. 27.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환경과장)

-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의 시설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수질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 전체를 포함하는 제명으로 변경함  
1) 위임사무 :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절차  
2) 자치사무 : 특별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나.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시설 이용료 등을 신설함(안 제8조·별표)

- 1) 이용료, 면제 및 반환 기준
- 2) 이용 제한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61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1. 17.~2. 6.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 조례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에서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조례로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3년 최초 제정된 조례임.
- 2016년 낙동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으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2020년 5월 6일 거창하천환경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추가 신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 조례의 내용을 보면 위임사무인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과 자치사무인 특별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 조례 제명에서 주된 내용인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는 빠져있어 본 개정안에서 제명을 「거창군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절차 및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조례」로 개정함으로써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어 제명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제6조제1항에서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개정하는 부분은 조례에서 용어를 약칭하려면 처음 나오는 부분에서 약칭해야 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제8조제4항을 신설하여 환경교육센터의 시설 이용료, 이용료의 면제 및 반환 기준을 별표와 같이 정의하였으며 시설 이용료의 산정은 월성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붙임 문서)와 타 지자체 유사시설을 참고하여 산정된 것으로 파악되나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위탁업체와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면제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장애인 단체나 국가유공자 단체 등 개별법에서 이용료 할인이 규정된 단체, 그 밖에 주민복지 등을 위해 규칙으로 정하는 단체로 정함으로써 환경교육센터의 시설 성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
- 이용료 반환 규정은 청소년 활동시설의 사용료 반환규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봤을 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상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참고자료〉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 구분               | 기준       |     | 사용료           |
|------------------|----------|-----|---------------|
| 1) 숙박비<br>(1인1일) | 청소년      |     | 6,000원        |
|                  | 일반       |     | 9,000원        |
| 2) 강당            | 공연<br>행사 | 오 전 | 70,000원       |
|                  |          | 오 후 | 100,000원      |
|                  |          | 야간  | 100,000원      |
| 3) 세미나실          | 행사<br>교육 | 오 전 | 40,000원       |
|                  |          | 오 후 | 50,000원       |
|                  |          | 야간  | 50,000원       |
| 4) 운동장           | 1일       | 경기  | 1회<br>50,000원 |
|                  |          | 경기외 |               |
|                  |          |     | 100,000원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5. 2. 14.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2. 14.  
다. 상정일자 : 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2. 27.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건축과장)

- 「건축법 시행령」에서 가설건축물별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로 위임되어 정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중에서 농막을 삭제함(안 제26조제2항)
- 1) 이유 : 농막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임시창고로 규정됨
  - 2) 근거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나. 가설건축물별 존치기간의 연장 횟수를 신설함(안 제26조제3항)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 2)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1. 21.~2. 10.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건축법」 제20조제1항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신고만으로 축조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 규정되어 있고, 규정된 것과 비슷한 것에 한하여 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거창군 건축조례 제26조제2항에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에서 제26조제2항6호를 삭제하는 것은 2025년 1월 24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따라 농막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창고로 규정되어 상위법에 따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 됨으로써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해 보이며,
- 본 개정조례안 제26조제3항을 신설하는 것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서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가설건축물별 존치기간의 연장횟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조례안 제26조제3항제1호의 신설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6호·제7호·제8호·제14호(붙임 참고)를 제외한 가설건축물은 연장횟수의 제한이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 〈참고자료〉

##### ※ 3년 이내로 존치하고 연장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가설건축물

-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개정조례안 제26조제3항제2호에서 1호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와 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연장횟수의 제한이 없도록 규정하였음.
- 농촌체류형 쉼터의 경우 2025년 1월 24일 「농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포함되었음.
- 3년 이내로 존치하고 연장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가설건축물은 그 성격상 3년 이내로 존치함이 타당하여 제한한 사항으로 특별히 존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인·허가를 득해야 함.
- 2022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해야 함에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규정없이 그동안 연장을 해오고 있었던 부분은 지적해야 될 부분으로 사료됨.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